|  |  |  |
| --- | --- | --- |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72호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 유형별 감독관리' 제도 실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이 공고에서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라 함은 비(非) 보세화물을 비(非) 통관 방식으로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로 반입하여 보세화물과 취합 또는 분류한 후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2. 이 공고는 각 유형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 적용된다.  3.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기업(이하 '구내기업'으로 약칭)이 비(非) 보세저장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득한 후 세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구내기업 및 보세물류와 관련된 화물흐름, 현금흐름 및 정보흐름 등에 대한 조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저장화물에 대한 상태별 감독관리' 제도를 적용받는 구내기업은 창고관리시스템(WMS)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인증 방식에 따라 세관특수감독관리 정보화 보조관리 시스템에 연결하여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데이터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6년 11월 29일 |  | **关于海关特殊监管区域“仓储货物按状态分类监管”有关问题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6年第72号  　　现将实施海关特殊监管区域“仓储货物按状态分类监管”制度有关事项公告如下：  　　一、本公告所称“仓储货物按状态分类监管”制度，是指允许非保税货物以非报关方式进入海关特殊监管区域，与保税货物集拼、分拨后，实际离境出口或出区返回境内的海关监管制度。  　　二、本公告适用于各种类型的海关特殊监管区域。  　　三、海关特殊监管区域内企业（以下简称区内企业）经营非保税仓储货物，需经管委会审核同意后报海关核准。  　　海关可依据相关规定对区内企业与保税货物有关的货物流、资金流和信息流等开展稽核查。海关可以对进出区非保税货物进行抽查。  　　四、适用“仓储货物按状态分类监管”制度的区内企业，应使用计算机仓储管理系统（WMS）；应按照海关规定的认证方式与海关特殊监管区域信息化辅助管理系统联网，向海关报送能够满足监管要求的相关数据。  本公告自公布之日起施行。  特此公告。  海关总署  　　2016年11月29日 |